#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48

발의연월일: 2023. 3. 20.

발 의 자: 강훈식 · 김교흥 · 김윤덕

신정훈 • 이학영 • 장철민

김민석 • 우원식 • 이소영

장경태·허 영·조오섭

최기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실제 상황대비훈련에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훈련 관련 경비 부담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34조제2항제5호의3, 제35조제2항, 제65조제1호의2 및 제67조제6호의3).

#### 법률 제 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

제35조제2항 중 "광역시·도"를 "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6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4조제2항제5호의3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제67조제6호의3을 제6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34조제2항제5호의3에 따른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에 드 는 경비

## 부 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의 수립 등) ① · ② (생 략) 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③ -----광역시장·특별자 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치시장•도지사-----·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 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 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 시 행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 시행) ① (생 략)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하다. 1. ~ 5의2. (현행과 같음) 1. ~ 5의2. (생 략) <신 설> 5의3.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훈련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 제35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 리대책의 수립 등) ① (생 략) 리대책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②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 

 따라 특별시·<u>광역시·도</u>·특
 -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기관리대책을
 - 

 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부담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9. (생략)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 6의2. (생 략)

<신 설>

<u>6의3.</u> (생략)

7. ~ 10. (생략)

(2)
<u>광역시·특별자</u> <u>치시·도</u>
 제65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4조제2항제5호의3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제1급감
염병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u>경비</u>
2. ~ 9. (현행과 같음)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1. ~ 6의2. (현행과 같음)
<u>6</u> 의3. 제34조제2항제5호의3에
따른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에 드는 경비
<u>6의4.</u> (현행 제6호의3과 같음)
7 ~ 10 (혀해고 간은)